外国人宿泊者の本人確認について

　住宅宿泊事業法第８条第１項の規定により、民泊の営業者は、宿泊者名簿を備えることが義務づけられています。また、宿泊者名簿には、宿泊者の氏名、住所、職業、宿泊日の他に、外国人宿泊者が日本国内に居住していない場合は、国籍、旅券番号を記載することが法で定められています。

　なお、日本国内でのテロ等の不法行為を未然に防ぐため、日本に居住していない外国人宿泊者の方には、旅券を呈示していただきます。営業者は旅券の内容から本人確認を行うとともに、旅券の写しを宿泊者名簿とともに保管することが、厚生労働省、国土交通省から指導されています。ただし、在日のアメリカ軍人等に該当する場合は、ミリタリーID等の本人確認を行える証明書を提示いただきます。この場合、営業者は本人確認を行いますが、写しをいただいたり、宿泊者名簿に番号を記載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旅券の呈示に応じていただけない場合は、旅券不携帯の可能性があるものとして、最寄りの警察署に連絡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외국인 숙박객 본인 확인에 대해

주택숙박사업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박 영업자는 숙박객 명부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객 명부에는 숙박객의 이름, 주소, 직업, 숙박 날짜 외에 외국인 숙박객이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테러 등 불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숙박객은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여권 내용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며 여권 사본을 숙박객 명부와 함께 보관하도록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지도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일 미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ID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자는 본인 확인을 하지만, 복사 하거나 숙박객 명부에 번호를 적지는 않습니다.

여권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여권불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